

제185회 국회

국회 본회의 의회의록

제 15 호

국회 사무처

1997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2. 국회정보공개규칙안
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4.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
6.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8.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9.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0.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1.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12.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13.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14.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15.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16.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9.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2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2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2.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23.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24.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25.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안
26.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27. 대한민국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8.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29.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동의안
30.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동의안
31. 서울 소재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 협정 체결동의안
32. 외교공관건축부지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협정 체결동의안

- 33. '97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 34. 통일외무위원장(정재문) 사임의 건
- 35. 통일외무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1.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
2. 국회정보공개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
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
4.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6.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박광태·박상천·김원길·이기문·신기하·이길재·임복진·정동채·조홍규 의원 외 70인 발의)	8
7.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0
8.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0
9.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내무위원장 제출)	11
10.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11.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박중우·이기문·박신원 의원 외 43인 발의)	12
12.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3.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4.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5. 군용항공기지 법 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16.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19.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2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2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서정화·조진형·백승홍·김무성·이신행·서정화 의원 외 22인 발의)	22
22.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외 20인 발의)	22
23.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홍준표·김중위 의원 외 47인 발의)	23
24.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25.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안(정부 제출)	23
26.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23
27. 대한민국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28.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23
29.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동의안	23
30.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동의안	23
31. 서울 소재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 협정 체결동의안	24
32. 외교공관건축부지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협정 체결동의안	24
33. '97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국제경쟁력강화및	

(15시48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다시 고언의 말씀을 여러 의원께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매 회의 때마다 의장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3시 개의 예정시간에서 무려 50분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짧은 의회 생활입니다마는 국회 본회의가, 또 국회의 회의시간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저는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당부의 말을 하거나 호소말씀을 드릴 여지없이 의원 모두가 협조해서 시간을 지키시고 국민의 수범이 되고 더욱이 정기국회의 중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개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론에서 매일 우리를 질책하고 있는 말 그대로 국민들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한 30명 아직도 부족합니다. 재삼 얘기입니다마는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지켜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신 의원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다 함께 국민에게 사죄하는 뜻으로라도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 **국회정보공개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5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정보공개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구천서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정보공개규칙안 및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한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정보공개규칙안,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은 1997년 10월 25일 김호일 의원·남궁진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 동의하여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입법부는 현재 국회의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국회사무총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회정보공개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사무처 등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회사무처 등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며,

셋째, 국회사무처 등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는 소속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다섯째, 국회사무처 등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통지받은 공개일 후 10일 이내에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하되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시 확인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일곱째,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제출받아 이를 포함한 국회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동 규칙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둘째,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으로 하되 사무처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외부인사 또는 국회공무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섯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하고 구성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여섯째, 위원회의 권한 중 청구인이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선정 권고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3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정보공개규칙안 심사보고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심사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한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정보공개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6시0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함석재 법제사법위원회의 함석재 의원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26일 김철환 의원 외 205인으로부터 발의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

에 관한 법률안과 97년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11월 4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회부된 2개의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합해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1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안만을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제안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97년 7월 15일부터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청사 증축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경기도 고양시·과주시와 안산시·광명시·시흥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 및 사건이 대폭 증가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각각 신설할 필요성이 생겨 가지고 이를 신설하되 법원청사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 시행일을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내년 3월 1일 개원되는 특허법원의 소재지가 현행 법상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대전광역시로 변경함으로써 특허법원과 특허청을 동일지역에 두게 해서 특허행정과 특허사법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허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전광역시가 특허법원을 내년 3월 1일에 개원할 수 있는 청사준비 등 여건이 미비한 바 있어 가지고 대전에 법원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특허법원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을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 안전에 대해서는 이완구 의원·김경재 의원·김칠환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은 특허법원의 소재지를 특허청과 동일한 지역인 대전광역시에 설치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 법률안은 특허법원의 소재지에 대한 개정규정을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과 특허재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특허행정 및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의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개정 목적과 상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허법원을 특허청과 동일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특허청 및 특허법원 간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술경쟁시대를 대비한 특허의 인식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의 소재지 변경을 2002년 3월 1일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송당사자의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관련 소송당사자들은 특허법원에 제출되는 소송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했던 특허출원서류 및 심판기록을 열람·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과 대전을 수차례 왕복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FAX로 송수신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지

(Search)검색자료와 심판자료 등이 지연·송달됨으로써 특허법원의 재판업무 처리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특허법원과 특허청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상당 기간 어렵게 됩니다. 특허쟁송사건은 기술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서울사무소 송무실 직원은 소송 진행에 관한 총괄적인 조정역할 및 연락창구역할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분야에 직접 관여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기술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관들은 변론기일마다 수시로 서울과 대전을 왕복하게 되어 상당 기간 동안 시간낭비는 물론 심판업무상에 차질이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기술패권·특허전쟁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의 연구와 특허행정 및 특허사법 기능을 동일한 지역에 조기 집중시킴으로써 삼위일체적인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둔산 행정타운 내에 특허법원 건립 시 필요한 부지 1500평을 확보하고 대전시가 책임지고 조성원가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2년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특허법원 대전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인구분산정책과 중앙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특허법원 소재지에 대한 개정규정 중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깊이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이완구·김정재·김칠환 의원 외 49인)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한 표결을 하기 전에 현재의 의결정족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에서 약 열 분의 의원이 부족합니다. 충족될 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한영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법사위를 중단시키고 정족수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의사국장……)

연락하고 있어요. 연락했어요.

(○한영애 의원 의석에서 — 그쪽의 스무 분만 이리 오셔도 되잖아요.)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회의를 중단시키고 법사위원들이 나와 주시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의원 수가 299명입니다. 법사위원 15명을 제하더라도 270여 명이 됩니다. 법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내일 회기는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안건이 적어도 60~70건이 지금 법사위원회에 밀려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가 그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법사위원 아닌 다른 의원들이 전부 출석을 하시면 거뜬히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회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회의를 중단하고 나와서 협조해 달라고 애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수정안에 대한 자구정리라든지 하는 것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6시2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최연희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30일 신낙균·이해찬·정희경·추미애·한영애·김한길·이성재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발의된 가정폭력방지법안, 같은 해 11월 22일 임진출·권영자·오양순·김영선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같은 해 11월 28일 함석재 의원 외 48인으로부터 발의된 가정폭력방지법안 등 각 교섭단체별로 제안된 가정폭력방지 관련 3개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96년 12월 13일 제181회 정기국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96년 11월 22일 임진출·권영자·오양순·김영선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된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당 위원회로 이송된 바 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가정폭력방지관련법안의 심사방향을 가정폭력의처벌에관한법안과 가정폭력피해자의보호에관한법안을 분류하여 심사하기로 정함에 따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의장에게 반려한 바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모두 7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각 교섭단체안과 관련위원회인 여성특별위원회 의견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으며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등을 수집하여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안이 공히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는 한편 현행법 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97년 11월 17일 제8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3개 교섭단체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을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제안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형법상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등 일정한 범죄와 이들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로 하고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8조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자의 피해자로부터의 격리나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안 제9조에서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16조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다섯째, 안 제29조에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조치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격리,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에서의 위탁, 구치소 등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안 제33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40조에서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의 신청기간 중에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자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 신청기간 중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서 탈락한 자 중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상신청기회를 추가로 부여해서 이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상천 의원, 이정무 의원, 남궁진 의원, 구천서 의원, 국창근 의원, 변웅전 의원, 류선호 의원, 박신원 의원, 신기남 의원, 이재선 의원, 한영애 의원, 박구일 의원, 정세균 의원, 이기문 의원 외 10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박상천·이정무·박광태 의원 외 119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7월 23일 국회 내무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된 광주민주화운

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종전 신청기간 내에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못 하였거나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 내어 탈락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은 종전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요건을 붙이고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 낸 자에 대하여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요건을 붙여 사실상 아무런 구제효과가 없도록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광주민주항쟁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당시에 상당수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제가 「배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표현되어 그들의 긍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자 중 상당수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제대로 증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기간이 30일로서 너무 단기간이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붙여 두면 사실상 구제받을 사람이 거의 없게 되어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희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개정법률안의 개정목적은 살리고자 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8년 1월 31일까지 재설정하여 종전 신청기간 중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자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종전의 신청기간 중에 보상심사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자 중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수정동의안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신한국당, 자유민주연합 3당 원내총무간에 합의를 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에대한수정안

(박상천 · 이정무 · 남궁진 · 구천서 · 국창근 · 변웅전 · 류선호 · 박신원 · 신기남 · 이재선 · 한 영애 · 박구일 · 정세균 · 이기문 의원 외 108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그러면 먼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앞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반대 무인, 기권 1인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8.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6시4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충조 내무위원회의 김충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년여 동안 여수반도권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소위 말하는 3여 통합을 추진해 왔던 본 의원으로서 오늘 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이 심사보고의 기회를 허용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 김충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각각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은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권이 동일한 전라남도 여수반도권 내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9일 실시된 주민의견조사에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의 34만 여수반도 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을 토대로 이룩한 역사적인 3여 통합은 전국 최초로 주민직접발의에 의해 이루어진 상향식 도농통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선시대에는 3개 행정구역의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예단했던 것을 깨뜨려서 통합을 이룩해 냈다고 하는 점에서 과거 관선시대의 내무부와 각 시도가 주도했던 하향식 도농통합과는 그 격이 판이하게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3여통합 여수시의 모범적 사례는 여타시·군의 도농통합 논의를 촉발시켜서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 광역화정책에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3여통합 여수시에 대해서는 여타의 복합시와는 그 격을 달리하는 지위상의 대우와 예산상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은 경기도 안성군과 김포군이 대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산업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안성시와 김포시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은 당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한 그러면 먼저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내무위원장 제출)

10.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6시5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헌기 내무위원회의 박헌기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성안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과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성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96년 11월 20일 조성준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중 개

정법률안과 96년 12월 11일 서석재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자연공원지역에 편입된 사찰소유 사유지 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두 법안을 제18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를 계속해 오다가 이번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내무위원회 대안을 성안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간 국립공원과 사찰간의 입장료 배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 일부를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 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0만 대를 초과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부족한 교통단속 장비를 확보하고 산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97회계연도로 되어 있는 적용시한을 2002회계연도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은 당 내무위원회에서 성안한 대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내무위원장)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한 그러면 먼저 자연공원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박종우·이기문·박신원 의원 외 43인 발의)

(16시5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1항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기문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서민협동조합형 기관으로서 지역 직장 단체를 기본 단위로 현재 2800여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0여만 명의 회원이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을 기반으로 회원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소매금융을 효율적으로 담당하여 지역과 서민금융에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합회는 금고의 원활한 자금수급 조절과 안정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부문을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상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금융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매매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합회를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용질서 및 지급결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고 연합회의 사업 중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둘째, 연합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중 국채와 지방채에 한해 인수·매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그러면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5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전석홍 내무위원회의 전석홍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 6월 1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14일 제184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13일 제185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를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개선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별정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과 근무성적 평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에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외국어 능력자 특별임용을 국제관계 전문인력 특별임용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부 특별임용자에 대한 승진상한제를 폐지하고 넷째,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유학의 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제10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7년 6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6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의 대부분은 1983년 일제 변경 시에 발급된 것으로서 발급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신분확인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경신발급에 있어서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에 같음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카드로 경신 발급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를 하고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사항 외에 인감증명법, 도로교통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공무

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증명서를 따로 발급 소지하는 데 따르는 행정적인 소모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둘째, 주민카드의 발급업무는 내무부장관이 설치하는 주민카드발급센터에서 대행하되 주민등록 자료는 주민카드 발급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며 셋째,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의 오용, 남용, 유출을 방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14일 제184회 국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였고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13일 제185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 등 7개의 증명을 수록하려던 것을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운전면허증을 제외를 하고 주민등록 자료만을 수록토록 하고 인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화하는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으로 1997년 6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 동년 6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을 주민카드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인감을 신고한 읍면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14일 제184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1월 13일 제185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인이 소지한 인감과 인감과일에 수록된 신고인감의 동일여부를 인감판독기로 확인함에 있어서 인감이 마모되거나 인주가 많이 묻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판독기 화면에 인감의 인영을 확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자세히 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그러면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미애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나가서 한꺼번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3건 다요?

(○추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추 의원의 신청은 의사일정 중 13항, 14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한다고 이렇게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의석에서 — 그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은 발언통지대로……

그러면 반대토론, 지금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무부가 제안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및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의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고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전문화의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에 있어서는 지방화를 내실화시켜 주기는커녕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인사권을 빼앗기고는 그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수록 인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오히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또는 공무원 신분보장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광역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나치리만치 제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인사위원장이 국가공무원인 행정부단체장이 말도록 하고 거기에 있어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공무원인 행정부단체장을 통해서 내무부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럴 경우 광역단체장의 인사권의 자율성은 침해가 됩니다. 이런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지방화시대,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 주는 데 역행하는 이런 지방공무원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국회 때 이미 제안을 한 바 있어서 법안심사소위나 내무위 상임위에서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고려하겠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그 신의마저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가 도입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요? 우리는 요즘처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다른 사람 모르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모르게 영화를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족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거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라 굳이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인간의 사생활과 존엄성 보호에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도저히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면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단체와 일반 기업체에서도 주민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열람기를 이용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산장치가 그 사용기록을 남기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될 경우에 마치 쥐가 다니는 곳곳마다 쥐똥을 남기듯이 우리도 전자주민카드 때문에 우리의 족적을 가는 곳마다 남기게 될 것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를 가리켜 마우스 드롭(Mouse drop), 쥐똥효과라 하여 남겨진 전자적인 사용기록을 결합, 가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는 이를 주민통제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전자주민카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한 그래서 그것을 판독기에 넣는 순간 우리는 정보로 전환되어 노출되고 그 노출로 인해 어디서건 우리의 행적이 일일이 기록될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상품의 포장지에 붙어 있는 바코드처럼 드디어 우리 국민에게도 바코드를 붙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영화 ‘네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 ‘네트’는 컴퓨터에 의한 인간의 신분관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 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범죄자가 모든 국민들의 신분이 집적되어 있는 컴퓨터에 침입해서 주인공의 신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었고 그 주인공은 자신의 기록을 되찾기 위해 범죄자와 싸워 나가는 과정을 치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기록이 뒤바뀌어 버림으로써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게 되는 등 기본적인 인간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심지어는 범죄자로 바뀌어져서 끊임 없이 경찰의 추적을 받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된다면 누군가가 이같이 전산망에 침입해서 혹은 자칫 담당 공무원이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들의 신분기록이 아예 없어지거나 바뀌는 것이 현실로 되고 바로 그러한 일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바로 나 자신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그 과정은 지금까지와는 매우 힘든 과정일 것이며 그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사회생활도 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21세기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정보 선진국 어느 나라도 전자적 방식으로 된 주민카드

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선진국이 그렇게 편리하다고 하는 전자적인 신분카드를 도입하지 않을까요?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신분증의 도입을 시도해 보다가 결국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결사반대하여 도입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전산정보기술에 있어서도 뒤처지고 공권력 남용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여건에서 전 국민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주민등록을 전자카드화했을 때는 그 벌어질 위험상황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에서 복지수혜를 목적으로 하고 가짜 복지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보험카드나 사회보장카드를 전자카드화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같이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발급받아야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단일하게 시행하는 우리의 전자주민카드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인 것입니다.

내무부는 현재의 비닐접착식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쉬워서 시급히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는 그 자체 보안이 최대 강점으로 카드표면이 특수 인쇄로 제작되어 기술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비밀번호로 자신의 정보는 자신만이 관리하므로 당사자의 허가 없이는 정보의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특수한 카드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전 국민을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정보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약자나 정신박약자 등은 자신의 비밀번호로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고 정보 보유기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 파일을 상호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개개인은 정보의 주체라기보다는 정보수집의 객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카드자체의 위·변조는 내무부의 주장처럼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적된 전산자료 자체가 해킹으로 위·변조되었을 때의 그 위험성은 바로 영

화 네트가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전산망에 침입하는 해커를 막을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내무부는 이미 주민등록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사항을 수록하는 것은 현행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전산화 차원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입력 관리한다는 것과 전 국민이 전자 칩이 내장된 신분카드를 소지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니는 곳마다 귀똥을 남기듯이 족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평생 금융기록을 추적당한다든지 활동기록을 추적당하는 등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외에도 추진과정상의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려 47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타 부처에 이러한 사업추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당부까지 하는 등 철저하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내무위에서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는 당초 계획한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을 통합하는 안 대신 약간 후퇴하여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과 주민등록증 등·초본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 병역사항, 지문 등 9가지의 개인정보를 수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전자주민카드의 컴퓨터 칩, IC칩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전 국민에게 소규모 컴퓨터 역할을 하는 전자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도래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자카드의 수록내용이 많으나 적으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수록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도입과정에 비해 대단히 수월한 과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초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주민카드 도

입의 필요성은 이번에 수정 통과된 법률에 의해 대부분 상실되었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민등록사항만을 수록한다면 굳이 전자제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 등의 민간기업이 국가의 전자주민카드 판독기와 출력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가능성도 별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로 직접 가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예산은 내무부의 계획대로라도 2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내무부가 아직 계산에 넣지 않은 관련자 교육비용, 이용자 교육비용, 사회적 적응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등·초본만을 수록하겠다는 수정된 제도는 이미 그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제18조의 4항은 이 법에 정하는 사항 외에 주민카드 자료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법 자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보다 공권력의 개인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생활보호와 인간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 등 헌법이 선언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여론수렴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도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의 수렴 없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특히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모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국가계획이며 한번 도입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제는 정부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전세계에서 최초의 시도이며 어쩌면 마지막 시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인간의 존

엄성을 해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제15대 국회는 바로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반인권적인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 정파를 떠나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과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의결에 반대 의사를 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환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박종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지금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찬성 토론의 원고가 조금 분량이 많습니 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 추미애 의원께서 좀 상세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작성된 원고에 좀 충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동법의 개정 취지와 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먼저 정부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의 대부분은 지난 83년 일제 갱신 발급된 것으로 이미 14년이나 경과되어 사진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는 등 신분확인이라는 주민등록증 본래의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비닐접착식으로 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가능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의 경신을 검토하면서 새로 발급할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IC카드형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 측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느 법률안보다도 활발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제185회 정기국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 심의 후 정부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 심사과정과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기존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이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 인감,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 7가지 증명기능을 1개의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함으로써 정보의 통합에 따른 국가기관의 오·남용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 문제와 둘째는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통합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과 외부자에 의한 해킹 등 전산자료의 교란 및 유출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위원회 심의결과 첫 번째 문제점인 개인정보의 통합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는 기술적인 보완과 제도적인 장치 등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당초 주민카드에 수록키로 되어 있던 7가지 증명 중에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3가지 기능은 완전히 제외시키고 현재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등 3가지 기능만 수록하되 인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수록할 수 있도록 수록증명의 범위를 대폭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카드에 수록할 주민등록 자료의 범위에 관해서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명시하고 수록 자료의 범위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호주, 세대사항, 병역사항, 주민등록기관코드, 지문 등 9가지 사항에 국한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인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과 외부자에 의한 전산자료 침입 및 교란 가능성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선 내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주민카드 자료 관계자를 운영자와 감독자로 이원화하여 각각 다른 열쇠를 소지토록 하고 자료 열람은 두 가지 열쇠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자료의 열람내역과 담당자의 인적사항, 시간 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 관리되도록 하고 자료의 무단열람 유출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킹 등 외부자에 의한 정보침입 및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카드 전산망을 일반 통신망과 완전 분리된 전용통신망으로 구축하였고 전산망센터는 국가 주요보안 시설로 정하여 방화벽을 설치토록 하는 등 완벽한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산망과 같은 전용통신망은 기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며 미 국방성이나 FBI 등에서 해커 등에 의한 전산망 침투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전산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용통신망을 통한 해킹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개인정보의 통합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안을 수정 보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경신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플라스틱카드로 경신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IC칩을 내장한 전자카드로 경신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동료의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카드로 경신할 경우 주소지 변경 등 주민등록 자료변경 사항을 카드 겉면에 수록할 수가 없고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되는 국민의 불편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본적, 주소, 호주, 병역사항, 주소지 변경내역, 지문 등 많은 개인정보가 겉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카드에는 겉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나머지 자료는 모두 IC칩에 내장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IC칩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전산화하고 주민등록 관련자료 이외의 사항을 입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된 바 있으나 주민등록 관련 자료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전산화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수록범위를 법률에 명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예로 들어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의 수집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조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전자주민카드의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부단체에서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문수록의 문제도 삼풍사고나 KAL기 추락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고 범죄예방과 수사에도 필수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더 크고 현행 주민등록증에 이미 수록되어 있으므로 논의할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새 전자주민카드가 국가신분증의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제가 시행되면 현재 발급수요가 연간 1억 2000만 통에 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3000만 통에 달하는 인감증명서를 개인용 PC를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고 은행, 학교,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할 예정인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재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행정경비와 사회적 간접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칩 반도체 산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칩 분야에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비메모리칩을 사용하는 전자주민카드제의 전면적인 시행은 21세기 정보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IC 카드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2000만 매가 넘는 전자카드를 사용 중에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카드를 발급 운영하고 있어서 IC카드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카드를 IC카드 발급하고 있고 이외에도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기카드를 대체한 IC카드 이용이 폭주하고 있는 추세로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IC카드 교체하고자 하는 정부의 법률개정안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논의 끝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등록증 경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시고 저희 내무위원회가 수정하여 상정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그 주요한 취지는 첫째로 지방행정의 세계화 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져 있고 둘째로 국가공무원제도와 균형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며 셋째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제도 문제는 현재도 행정부지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끝으로 인감증명법에 관한 것은 이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지하시고 저희 내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한 이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해 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 회의장으로 나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의결정족수 확인해 주세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에서는 좀 의원들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스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나 하면 또 지금 나가시고 또 지금 회의가 중단되고 이렇게 되는데 빨리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결정족수는 150명입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127명, 결원이 23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복도와 밖에 지금 의사국 보고를 들으면 많은 의원들이 계신다는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뜻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표결을 선포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들께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라면 자정까지 자연 폐회될 때까지 가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입장하고 계신 의원들께서는 가급적 출입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의사일정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표결이 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21인, 반대 32인, 기권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앞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앞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07인, 반대 38인, 기권 8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앞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4인 중 찬성 106인, 반대 36인, 기권 12인으로서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 처리에 있어서 제안설명 또는 심사 보고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농축해서
간단 명결하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2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5항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박세환 국방위원회 박세환 의
원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에 제약이 많은 기지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

기 위하여 비행 안전구역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국
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법체계상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4조제2호의 개정취지가 현행 비제
트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설정기준이 복잡·불
명확하여 그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명확히 정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러
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나머지 비행안전구역
도 동일하게 국방부령에서 그 기준을 명백히 정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헬기전용 작전
기지의 진입표면의 길이는 1000m만 확보하면 충
분하므로 비행안전구역 설정을 최소 필요한 범위
로 국방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안
제4조 본문 단서에 신설하였고 셋째, 기본 표면
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수
정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 보완과 기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
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
대장이 해군기지 구역 안에서의 어업면허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축물의 신·증축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군기지 구
역 안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의 편익을 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에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군겸용 기술개발
사업과 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비 및 시험·평
가시설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여 국제경쟁력을 제
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특수장비는 국방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
는 것으로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
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그러면 먼저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3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장대리 박광태 통상산업위원회의 박광태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체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매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한국통신 등 3개 기관이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새로 이 법에 의한 공

공기관의 범위에 추가하여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증대 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계약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품질개선과 성실한 계약이행 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시·도지사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대하여 해외 시장조사와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적립금액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바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지도사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도사의 책임과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특정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증명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그러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3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9항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장대리 김철환 통상산업위원회 김철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 외 205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전광역시 설치키로 한 특허법원의 설치시기를 2002년 3월 1일에서 2000년 3월 1일로 개정키로 하고 신한국당 이완구 의원, 국민회의의 김정재 의원, 자민련의 김철환 의원 외 49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출석의원 154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 기권 1로 절대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구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그동안 기술개발 성과로 상업화됨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여 대체에너지사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상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대체에너지기본계획에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에 대하여 투자를 권고하도록 하여 대체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여 대체에너지 기초수요를 창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시범보급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1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키로 한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의 장려대상기관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그러면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4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0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임인배 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당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에 따라서 이 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상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그러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서정화·조진형·백승홍·김무성·이신행·서정화 의원 외 22인 발의)

22.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외 20인 발의)

23.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홍준표 · 김중위 의원 외 47인 발의)

(18시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1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건설교통위원회의 조진형 의원께서 심사 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의 합의에 따라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물론 속기록에 그대로 게재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4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4항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박시균 의원께서 심사 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안(정부 제출)

(18시4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5항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김도연 의원께서 심사 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안건 역시 심사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정보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27. 대한민국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8.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29.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동의안

30.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동의안

31. 서울 소재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 협정 체결동의안

32. 외교공관건축부지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협정 체결동의안
(18시4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6항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대한민국정부와 과푸아뉴기니독립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 소재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 협정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외교공관건축부지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협정 체결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통일외무위원회의 이견개 의원이 심사 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정부와 과푸아뉴기니독립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 소재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 협정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 외교공관건축부지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협정 체결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과푸아뉴기니독립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 소재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 협정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교공관건축부지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협정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97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 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국제 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제출)

(18시46분)

○의장 김수한 다음은 '97년도 국제경쟁력강화 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의 이응선 의원이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97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97년도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4항은 유인물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일외무위원장(정재문)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통일외무위원장의 선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내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66건 정도의 중요한 민생 기타 각 법안을, 안건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지 않도록 2시 정각에 개회가 되도록 하고 내일 다시 이렇게 도중에 회의의 진행을 멈춘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내일은 만사를 폐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제1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 의원 수(224인)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류	종	하
내무부장관	조	해	녕
법무부장관	김	중	구
국방부장관	김	동	진
통상산업부장관	임	창	렬

총무처장관 심우영

○출석 정부위원

통상산업부차관 한덕수

건설교통부차관 김건호

【보고사항】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위원회	위원장	연월일
통일외무	정재문	1997. 10. 29

○간사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건설교통	이원범	신한국당	1997. 11. 12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이의익	건설교통	보건사회	자유민주연합	1997. 11. 12
이재선	보건사회	건설교통	자유민주연합	
이의익	국회운영		자유민주연합	
박신원		국회운영	자유민주연합	1997. 11. 13
서청원	재정경제	행정	신한국당	
이상현	행정	재정경제	신한국당	1997. 11. 14
김정수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신한국당	
김광원	농림해양수산	재정경제	신한국당	
차수명	재정경제	통신과학기술	신한국당	
손학규	통신과학기술	재정경제	신한국당	
김용환	재정경제	내무	자유민주연합	
이상만	내무	재정경제	자유민주연합	1997. 11. 15
차수명	통신과학기술	재정경제	신한국당	
손학규	재정경제	통신과학기술	신한국당	
김정수	농림해양수산	재정경제	신한국당	
김광원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신한국당	1997. 11. 15
강삼재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	신한국당	
이우재	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신한국당	1997. 11. 15
이의익	보건복지	건설교통	자유민주연합	
이용삼	건설교통	보건복지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김호일	통상산업	법제사법	신한국당	1997.
목요상	법제사법	통상산업	신한국당	11. 17

○의안 제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7월 30일 내무위원장 제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2일 정동채 · 김원길 · 길승흠 · 최재승 · 최희준 · 신기남 · 천정배 · 조한천 의원 외 69인 발의)

11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청소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12일 정동채 · 김원길 · 길승흠 · 최재승 · 최희준 · 신기남 · 천정배 · 조한천 의원 외 69인 발의)

이상 3건 11월 14일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등에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이상 2건 11월 13일 김홍신 · 신낙균 · 이재선 · 황성균 의원 외 23인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통일외무위원장(정재문) 사임의 건

(11월 14일 정재문 의원 제출)

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4일 김명규 · 김봉호 · 안동선 · 이협 · 이윤수 · 임채정 · 한화갑 · 국창근 의원 외 69인 발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5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대안)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1월 15일 내무위원장 제출)

'97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1월 15일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 관한특별위원장 제출)

국회정보공개규칙안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이상 2건 11월 15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대안)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의회지도자(이승만)상 건립의 건

(11월 14일 목요상 · 이정무 의원 외 64인의 찬성)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기념회 회장 신도환 제출)

의회지도자(신익희)상 건립의 건

(11월 14일 목요상 · 박상천 · 이정무 의원 외 140인의 찬성)

(사단법인 해공 신익희 선생기념회 회장 류치송과 정영훈 의원 제출)

이상 2건 11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10월 17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동의안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동의안

외교공관건축부지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협정 체결동의안

(이상 6건 10월 18일 정부 제출)

(이상 7건 11월 13일 통일외무위원장 보고)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31일 정부 제출)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 법률안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 관한법률안

(이상 2건 11월 5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15일 내무위원장 보고)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6월 12일 정부 제출)

(11월 15일 국방위원장 보고)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7월 4일 조순형 의원 외 20인 발의)
(11월 15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8일 정부 제출)
(11월 15일 통상산업위원장 보고)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안

(11월 3일 정부 제출)
(11월 15일 정보위원장 보고)
이상 14건 원안대로 의결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6월 11일 정부 제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6월 12일 정부 제출)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7월 24일 박종우·이기문·박신원 의원 외 43인 발의)
(이상 4건 11월 15일 내무위원장 보고)

해군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6월 5일 정부 제출)

군용항공기지법 중 개정법률안

(6월 12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5일 국방위원장 보고)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10월 15일 정부 제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월 2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5일 통상산업위원장 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7월 7일 정부 제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0일 서정화·조진형·백승홍·김무성·이신행·서정화 의원 외 22인 발의)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30일 홍준표·김중위 의원 외 47인 발의)
(이상 3건 11월 15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이상 11건 수정 의결

각급법원의시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9월 25일 김철환 의원 외 205인 발의)

각급법원의시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월 1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1996년 11월 20일 조성준·권노갑·김성곤·김옥두·김홍일·박상규·박찬주·배종무·설훈·신낙균·임복진·정한용·조찬형·채영석·최선영·추미애·한영애·한화갑·권수창·권오을·이미경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1996년 12월 11일 서석재·박상규·하순봉·구천서·전용원·조성준·황규선·권수창·박헌기·함종한 의원 외 47인 발의)
(이상 2건 11월 15일 내무위원장 보고)

가정폭력방지법안

(1996년 10월 30일 신낙균·이해찬·정희경·추미애·한영애·김한길·이성재 의원 외 72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1996년 11월 22일 임진출·권영자·오양순·김영선 의원 외 149인 발의)

가정폭력방지법안

(1996년 11월 28일 함석재 의원 외 48인 발의)
(이상 3건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의안 철회

의사상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996년 11월 28일 김홍신·조순형·권오을·김근태·김민석·김한길·방용석·변웅전·류선호·이미경·이부영·이수인·이해찬·임채정·장영달·장을병·정동영·제정구·천정배·한영애 의원 발의)
11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월 22일 박광태·박상천·김원길·이기문·신기하·이길재·임복진·정동채·조홍규 의원 외 70인 발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교육공무원보상에관한법률안

(10월 31일 박광태·설훈·김한길·배종무·정희경 의원 외 72인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자동차 보험환자 진료비 적정지급 및 의료보수심의회 구성에 관한 청원

(1997년 11월 10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1 현
대빌딩 13층 대한병원협회 회장 한두진으로부터
박시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보고서

국제금융기구출자금변동현황보고서

(11월 14일 재정경제원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벤처기업육성·해양수산정책·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질문서**

(10월 31일 이강두 의원 제출)

11월 1일 정부에 이송

재벌의 언론기관 소유·삼성자동차에 관한 질문서

(11월 1일 이신행 의원 제출)

11월 3일 정부에 이송

행당1-2지구 강제철거에 관한 보충질문서

(11월 4일 제정구 의원 제출)

11월 5일 정부에 이송

전국구의원 탈당에 관한 질문서

(11월 13일 김홍신 의원 제출)

11월 14일 정부에 이송

한국인권문제연구소의 선거운동에 관한 질문서

(11월 14일 이신범·정재문·권익현·김명윤·

김윤환·박관용·이홍구·김도연·김석원·

류홍수·신상우·조용규 의원 제출)

11월 15일 정부에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접대비 사용실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위천국가공단지정·잠수함사업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전주공항 건설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4건 11월 10일 정부 제출)

유해물질배출·탈북자보호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11월 13일 정부 제출)

금융실명제·항공산업·택지개발예정지구의 부동산

투기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벤처기업육성·해양수산정책·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11월 14일 정부 제출)

(이상 7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